

# 특허제도의 이해



**NAM & NAM**  
..... Since 1952

특허법인 남앤남 이병진 변리사

#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 특허법

## 제1조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 등록 마복림 제 7564호

# 떡볶이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젠 며느리도 알아요!!"

- 전국은
- 아침을
- 무엇이든
- 생방송
- VJ 특
- 리얼
- 6시
- CF 태

"인생, 먹는게 최고"  
Life is Beautiful

ソムナン 発祖  
マボリン・ハルモニチブ



Coca-Cola 로 마음을 전해요!  
**우리가족**

(224 kcal)      코카·콜라

Coca-Cola 로 마음을 전해요!  
**사랑해**

(224 kcal)      코카·콜라

Coca-Cola 로 마음을 전해요!  
**친구야**

(224 kcal)      코카·콜라

Coca-Cola 로 마음을 전해요!  
**잘될거야**

(224 kcal)      코카·콜라

Coca-Cola 로 마음을 전해요!  
**자기야**

(224 kcal)      코카·콜라

Coca-Cola 로 마음을 전해요!  
**고마워**

(224 kcal)      코카·콜라



공개

# GIVE & TAKE

독점배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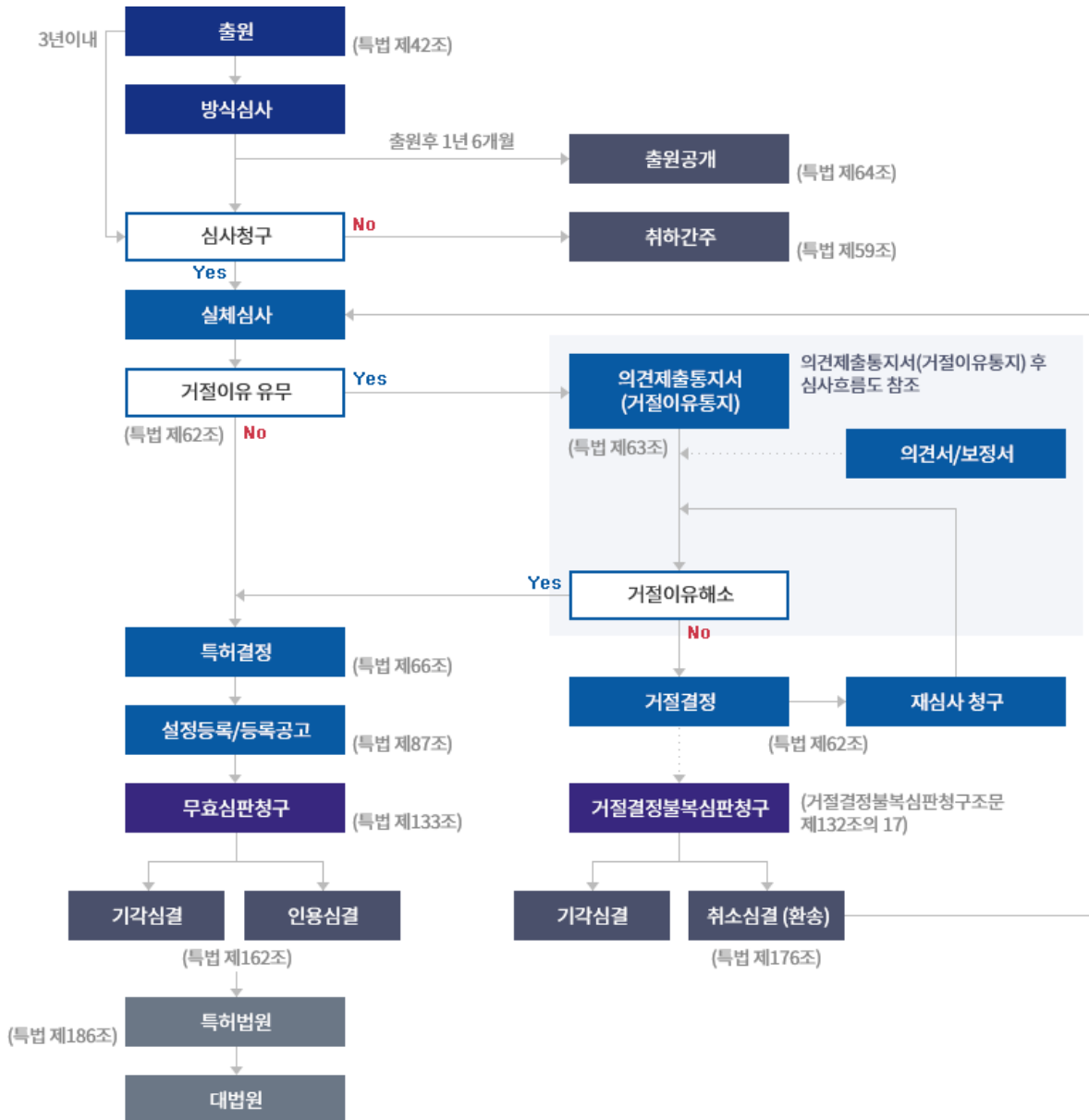


Creative Oscillations is a free media exchange at Strangelight Gallery in conjunction with Version Fest 2010.

*A patent is, in essence,  
a monopoly  
granted by the government  
to an inventor  
in exchange for  
full disclosure of the invention*



# 특허출원 흐름도



## 특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고도성)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 (1)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처치, 경감,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등의 방법(의료 행위에 속하는 것)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임
- (2) 사람을 진단, 치료 및 수술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행해지는 전반적인 물리적인 의료행위 이외에도 이를 위한 예비적 처치 방법(예: 마취 방법) 및 인간에 대한 피임/분만 등의 처치 방법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음

Ex) X선에 의해 인간의 내부기관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

Ex) 방사능으로 표지된 화합물을 투여하여 환자의 병소 감염 부위를 찾아내는 방법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예비적 방법에 속함)

Ex) 피임용 약제를 여성에게 투여하여 임신을 억제하는 방법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 (3) 청구범위가 사람의 질병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등의 발명인 경우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음

Ex) 화합물을 투여하여 종양 조직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  
(실질적으로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봄)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4) 인간의 치료방법, 진단방법 및 수술방법과 관련이 없는 발명일 경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보지만, 미용효과와 치료효과를 모두 나타내는 발명일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음

Ex) 환자와 6개의 조직적합성 항원(HLA) 유전자가 일치하는 제대혈을 선택하여 그로부터 줄기세포를 분리 및 배양하여 얻어진 줄기세포를 대머리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  
(모발 이식의 경우, 미용 효과 이외에 탈모증 치료 효과가 인정됨)

Ex) 안면 피부에 각질 박리 촉진제인 5,15-디아세톡시-3-페닐아세톡시-14-옥소라티라디엔-6(17)-에폭사이드를 30분간 접촉시킨 후 세정하여 각질을 박리하는 방법  
(안면 피부를 화학적 방법으로 박리하는 방법은 피부의 질병상태 개선을 위한 치료방법에 해당할 수 있음)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2. 인간을 제외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의약을 사용하여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의 질병을 치료, 진단,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하거나 발육을 촉진하는 등의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함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250>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등의 의약의 조제 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다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특허의 대상이 된다.

# 특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3. 인체 외 배출물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

인체에서 이미 채취, 제거, 배출된 물(物), 예컨대 사람의 혈액, 혈장, 혈청, 뇨, 변, 농, 수액, 태반, 종양, 모발, 손톱 등을 원료로 하는 의약을 제조하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4. 서열 등 단순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하는 대상이 아미노산 서열, 염기 서열 또는 단백질 3차 구조에 대한 원자 좌표 자체인 것은 단순한 정보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음

Ex) 서열번호 1로 표시되는 유전자 서열

Ex) 서열번호 2의 아미노산 서열

(기술적 특징이 정보 내용에 있고 발명의 목적이 그 정보를 제시하는 것에만 있는 경우는 단순한 정보의 제시에 불과하여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음)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발명

(1)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는 방법, 인체를 구속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 등으로 얻어진 신체의 일부를 원료로 하는 의약 및 이의 제법은 특허법 제32조에 해당하여 특허 받을 수 없음

(2) 인간의 신체를 원료로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발명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특허 받을 수 있음

Ex) 사람의 혈액을 원료로 하는 의약 및 그 제법

Ex) 사람의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 및 그 제법

(태반은 임신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지는 장기이지만 태반 자체는 그 기능을 끝낸 후 자연히 배출되는 것으로 이러한 자연 배출 후의 것이라면 이것을 사용하여도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2.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 (1) 발명 본래의 목적을 위한 실시가 필연적으로 공중의 위생을 해하는 때는 그 발명은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함

Ex) 인체에 해로운 양의 유해물을 안정제, 착색제, 피복제 등으로 사용하는 의약 및 그 제법의 발명

(유해물이 사용된 경우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인지는 그 유해물로 인한 유해성과 목적하는 효과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Ex)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인간 세포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방법

- (2) 실시상태에 따라 유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함

Ex) 태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임신부에게는 투여가 금지되지만 일반인에게는 허용되는 의약발명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1. 의약 용도발명

- (1) 공지된 물질의 의약용도에 관한 발명은 용도(투여용법·용량, 대상 환자군으로 한정된 의약용도 포함)를 달리하는 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2) 다만, 인용발명과 출원발명이 하기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봄
  - 의약용도가 표현상 상이해도 약리효과가 동일 또는 밀접한 약리작용에 바탕을 두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약의 적용대상, 적용수단 및 적용 시기 등을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2. 천연물 의약발명

(1) 출원발명이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황제내경(黃帝內經), 상한론(傷寒論), 의심방(醫心方),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의방유취(醫方類聚), 동의보감(東醫寶鑑), 중약대사전(中藥大辭典), 도해향약대사전(圖解鄉藥大辭典) 등의 기존한의서 및 한약관련사전에 기재된 처방, 민간요법으로부터 유래된 처방 등 선행기술을 모방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봄

Ex) 지렁이 건조분말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당뇨병 치료제  
(소갈은 예로부터 소복산기(小腹疝氣)라 해서 당뇨병과 같은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없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후627 판결 참조).)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2. 천연물 의약발명

(2) 혼합약재 혹은 단일약재를 가공하여 만든 의약으로서 그 구성 및 용도가 기존 한의서, 한약관련 사전 또는 민간요법으로부터 공지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의학적인 용도를 발명하였다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봄

Ex) 새로운 의학적 용도를 발견한 경우

[청구항] 백두옹(白頭翁, 할미꽃) 뿌리 엑기스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당뇨병치료용 조성물

[인용발명 1] 백두옹 엑기스가 항아메바, 항트리코모나스, 항균제로서 사용됨

[인용발명 2] 할미꽃 뿌리 추출물의 항암제로서의 용도

- 할미꽃 뿌리 추출물의 당뇨병 치료제로서의 구체적인 용도가 인용발명 1 및 2에 공지된 바가 없어서, 출원발명의 의약용도가 인용발명 1 및 2에 기재된 의약용도와 상이하므로 신규성이 인정됨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3. 바이오 의약발명

- (1) 펩티드 또는 핵산을 포함하는 바이오 의약발명에서 유효성분은 원칙적으로 펩티드의 아미노산 서열 또는 핵산의 염기서열을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고, 선행기술과 동일한 서열의 펩티드 또는 핵산을 포함하는 의약 조성물의 신규성은 의약용도를 중심으로 판단함

Ex 1) 공지된 펩티드와 아미노산 서열이 다른 펩티드

[청구항] 서열번호 1(GAPRMRCTA)로 이루어진 펩티드 A

[인용발명] 서열번호 1(AMILCAKVRA)로 이루어진 펩티드 A

- 단백질의 명칭이 같더라도 분리·정제된 상태로 개시되고, 아미노산 서열에 차이가 있어 공지의 물질과 비교하여 별개의 물질로서 구별되는 경우 신규한 것으로 봄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3. 바이오 의약발명

- (1) 펩티드 또는 핵산을 포함하는 바이오 의약발명에서 유효성분은 원칙적으로 펩티드의 아미노산 서열 또는 핵산의 염기서열을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고, 선행기술과 동일한 서열의 펩티드 또는 핵산을 포함하는 의약 조성물의 신규성은 의약용도를 중심으로 판단함

Ex 2) 공지된 펩티드의 일부로 이루어진 단편

[청구항] 단백질 X 유래의 아미노산 서열 CGSEQNPTA로 표시되는 펩티드

[인용발명] 단백질 X의 전장 아미노산 서열

- 단백질 X의 전장 서열이 공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 단편으로 구성되는 펩티드는 공지의 단백질 X와 별개의 물질로서 신규한 것으로 봄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3. 바이오 의약발명

- (1) 펩티드 또는 핵산을 포함하는 바이오 의약발명에서 유효성분은 원칙적으로 펩티드의 아미노산 서열 또는 핵산의 염기서열을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고, 선행기술과 동일한 서열의 펩티드 또는 핵산을 포함하는 의약 조성물의 신규성은 의약용도를 중심으로 판단함

Ex 3) 공지의 펩티드를 포함하지만 상이한 의약용도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항] 서열번호 1(GAPRMRCTA)로 이루어진 펩티드를 포함하는 간암 치료용 조성물

[인용발명] 서열번호 1(GAPRMRCTA)로 이루어진 펩티드를 포함하는 폐암 치료용 조성물

- 공지의 펩티드 또는 재조합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더라도 그 의약용도가 상이한 것이어서 신규성이 인정



# 특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3. 바이오 의약발명

(2) 항체를 포함하는 바이오 의약발명은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 그의 항원이나 에피토프를 기준으로 항체의 신규성을 판단하고, 공지된 항체를 포함하는 조성물은 그 의약용도의 공지 여부로 신규성을 판단함

Ex) 공지된 항원에 대한 항체이지만 기존 항체와 아미노산 서열이 상이한 항체를 포함하는 경우

[청구항] 서열번호 1의 중쇄 가변영역 및 서열번호 2의 경쇄 가변영역을 포함하는 항체를 포함하는 AIDS 치료용 조성물

[인용발명] 항원 A에 대한 항체를 포함하는 AIDS 치료용 조성물

- 서열번호 1의 중쇄 가변영역 및 서열번호 2의 경쇄 가변영역을 포함하는 항체가 항원 A에 대한 항체인 경우라도, 출원발명의 특정 서열로 한정된 항체가 인용발명의 항체와 아미노산 서열이 상이한 경우에 신규한 것으로 봄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4. 기타

- (1) 발명의 기재형식은 다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이 형식적으로 상이할지라도  
목적 및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

Ex) 의약의 제조장치의 발명과 그의 단순한 사용방법으로 보이는 의약의 제조방법의 발명(예를 들어, 청구범위의 말미가 각각 정제의 제조방법, 정제의 제조장치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성은 동일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

Ex) 약제의 발명과 그의 단순한 사용방법의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

Ex) 혼합물의 발명과 단순한 혼합에 의한 그 제법의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4. 기타

- (2) 청구범위의 말미 표현만이 다른 제법발명  
청구범위 말미의 표현(예컨대 용도 표현)이 다른 의약의 제법발명이라도 제  
법 자체가 동일하고 같은 약리효과에 바탕을 둔 경우,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봄

Ex)

- ① 소 또는 돼지의 췌장을 클로로포름 포화수로 추출하고 추출액에 알코올  
을 가하여 생성하는 침전을 채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효소의 제법
- ② ..... 특징으로 하는 소화효소의 제법
- ③ ..... 특징으로 하는 위장약의 제법

- 각각 타 발명의 용도를 동일한 표현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료와 처리수단이 동일하면 생산물이 동일하고 유사한 약리효과를 근거  
로 한 것이므로 이것들은 동일발명으로 인정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4. 기타

(3)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과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  
인용발명이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이고, 출원발명이 그 하위개념의 상위  
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일 경우 그 출원발명은 인용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상  
실됨

Ex) 인용발명이 하위개념이고 출원발명이 상위개념인 경우  
[청구항] 식물 A를 에틸렌글리콜모노에테르로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심제의 제법

[인용발명] 식물 A를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로 추출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강심제의 제법

- 에틸렌글리콜모노에테르는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의 상위개념에  
해당되므로 양자는 동일발명으로 봄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4. 기타

### (4) 새로운 공정이 부가된 제법발명

새로운 공정이 부가된 제법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봄

다만, 부가된 공정이 공지 혹은 관용기술의 공정이고, 그 공정이 단순히 부가된 것이어서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없다면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봄

Ex) 공지 또는 관용기술의 공정이 부가된 발명의 경우

[청구항] 유(油)를 요오드화하고 얻어지는 요오드화유 X를 사용하여 수용화합을 특징으로 하는 요오드화유 제제의 제법

[인용발명] 요오드화유 X를 사용하여 수용화합을 특징으로 하는 요오드화유 제제의 제법

- 요오드화유의 제조공정이 공지이면 양자는 동일발명으로 봄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1. 의약 용도발명

### (1) 의약 용도발명의 성질과 판단기준

의약 용도발명은 특정한 물질의 약리효과를 밝힌 것이므로 약리효과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그 활성물질의 화학구조 또는 조성물의 구성성분으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없는 정도의 발명이거나 또는 인용발명에 기재된 약리기전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추론할 수 없는 정도의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활성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되고, 선행문헌에 그 의약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님

Ex) 사람에게 사용하는 물질을 가축 또는 가축용으로 전용하는 발명

- 동일 또는 유사한 질병용 의약으로 알려진 물질을 동물용 ↔ 인간용으로 단순히 전용한 것에 불과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음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1. 의약 용도발명

(2) 복수의 유효 성분을 포함하는 의약 용도발명  
의약 용도발명의 유효 성분이 여러 개인 경우, 의약용도와 함께 그 유효 성분들의 결합 용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선택된 복수의 유효성분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진보성이 인정

Ex) 유효성분 중의 하나를 쉽게 치환할 수 있으나 효과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 → 진보성 인정 안됨

Ex) 병용되는 약물의 작용기전에 차이가 있고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 진보성 인정됨

Ex) 유효성분의 조합이 동일하나 의약용도를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 → 진보성 인정됨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1. 의약 용도발명

- (3) 투여용법·용량 또는 대상 환자군으로 한정된 의약 용도발명  
투여용법·용량 또는 대상 환자군을 한정된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그러한 한정 사항을 구성으로 인정하여 진보성을 판단

투여용법·용량, 대상 환자군을 한정된 구성으로 인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 특허로써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봄

### Ex) 진보성 부정 사례

- ① 인용발명에 유사한 투여용법·용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② 인용발명으로부터 투여용법·용량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 ③ 한정된 대상 환자군에 대하여 현저한 효과가 없는 경우
- ④ 투여시기를 한정하였더라도 인용발명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⑤ 투여기간을 한정하였더라도 인용발명으로부터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2. 천연물 의약발명

(1) 천연물의 의학적인 용도가 기존한의서, 한약관련사전, 민간처방 등 선행기술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음

Ex) 기존 한의서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청구항] 오리나무 수피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숙취해소용 약학조성물

[인용발명] 오리나무 수피 추출물이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나제 효소활성을 증진시킴

- 인용발명에는 오리나무 수피 추출물의 의학적인 용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alcohol dehydrogenase는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효소로 이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음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2. 천연물 의약발명

(2) 동속이종(同屬異種)의 식물이나 미생물 등으로부터 유래된 의약발명에 있어서, 상호간에 의학적인 용도가 동일하더라도 인용발명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된 약리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봄

Ex) 의학적 용도가 같지만 인용발명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효과가 있는 경우  
[청구항] 찹쌀(*Oryza sativa* L.)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궤양제

[인용발명] 멥쌀(*Oryza glutinosa* M.)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궤양제

- 에탄올로 유발시킨 위궤양 모델 실험에서 찹쌀 추출물이 멥쌀 추출물에 비해 5배 이상의 항궤양 효과를 나타내어 약리효과가 탁월하다고 판단되므로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봄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3. 바이오 의약발명

(1) 펩티드 또는 핵산이 진보성을 가진 경우 그 펩티드 또는 핵산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바이오 의약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봄

Ex) 진보성을 가지는 펩티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약학조성물

[청구항] 서열번호 2(GAGSGAGAGSGAGAGY)의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펩티드를 포함하는 기억, 인지 또는 학습장애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인용발명] SMP-1(GAGAGVGY), SMP-2(GVGY), SMP-3(GAGAGY) 또는 SMP-4(GVGAGY) 중 어느 하나의 실크 단백질-미미킹(mimicking) 펩티드를 포함하는 신경 세포 사멸에 따른 신경 퇴행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유효성분인 펩티드가 그 아미노산 서열 및 성질이 다른 특유한 구조인 경우에는 인용발명과 대비한 의약용도 및 효과의 현저성과 무관하게 진보성이 인정됨(대법원 2018.9.13.자 2018후10794 판결 참조)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3. 바이오 의약발명

(2) 공지 단백질에서 일부 아미노산이 결실, 부가 또는 치환된 변이 펩티드가 여전히 공지 단백질과 유사한 골격을 가지는 경우에, 공지 단백질의 공지된 의약용도와 관련된 변이 펩티드의 의약 용도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봄

단, 활성, 부작용, 생체 이용률 또는 안정성 등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봄

Ex) 공지 단백질과 유사한 골격을 가지는 변이 펩티드의 공지된 의약 용도 발명

- 기능이 공지된 펩티드와 유사한 골격의 다양한 펩티드 화합물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유사한 골격을 가지는 펩티드가 공지된 기능과 유사한 생리활성을 가질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음(특허법원 2017.12.15. 선고 2017허6088 판결 참조)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3. 바이오 의약발명

- (3) 단백질 치료제의 제조 및 정제 방법에서, 목적물 및 배양배지 종류, 농축, 정제, 순도 등 관련 구성요소들이 인용발명에 공지된 단백질 치료제 생산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채용 또는 변경되는 기술수단이고, 인용발명의 효과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음
- (4) 공지된 펩티드를 포함하는 의약 용도발명에서, 공지된 펩티드의 기능에 관해서 부정적 교시가 있는 인용발명으로는 해당 바이오 의약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4. 의약품 제제발명

### (1) 선행기술의 제제에서 유효성분이 치환된 경우

선행기술과 출원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동일하고 양 발명의 화합물이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거나 동일한 범주의 화합물이라면 선행기술의 제제에 출원발명의 유효성분을 적용하는 것에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음

Ex) 타물질의 산화방지제로서 공지된 물질을 산화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진 의약에 단순히 전용하는 경우의 조성물 및 안정화 방법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음

Ex) 타물질의 용해보조제로서 공지된 물질을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의약물질에 단순히 전용하여 농후액을 제조한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음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4. 의약품 제제발명

### (2) 효과·특성으로 한정된 제제

효과 또는 특성(약물동력학적 파라미터 등)으로 한정된 제제에서, 그 효과 또는 특성은 제제를 이루는 다른 구성을 한정하는 요소로서 이를 고려하여 진보성을 판단함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에서 제제를 이루는 구성 성분이 동일하고 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 또는 특성이 동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음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4. 의약품 제제발명

### (3) 제제의 제조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

제조방법이 단순히 제제학적 관용기술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으나, 제제의 제조방법이 달라짐으로써 제조되는 최종 제제가 선행기술과 구별되고 그러한 제제가 나타내는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됨

Ex) 통상적인 방법을 단순히 조합한 경우

우황청심원의 요변성 현탁제의 제조방법 → 단순 조합으로 진보성 부정

Ex) 제조방법에는 특징이 없으나 제조된 제제가 새로운 효과를 가지는 경우  
액제 우황청심원의 제조방법

→ 기술적 구성요소 각각은 공지되어 있지만, 액제를 제조하는 구성 자체가 공지된 것으로 볼 자료는 없으며, 복용의 간편함과 효과의 신속성 등의 작용효과는 우황청심원 자체가 가지는 작용효과와 다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진보성 인정(대법원 1996.10.11. 선고 96후559 판결 참조)



# 특허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

신규성

진보성

## 4. 의약품 제제발명

- (4)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제제  
제제발명은 공지된 의약 성분과 부형제를 구성으로 하고 통상적인 형태로 제형화한 발명이 대부분이므로, 각 구성 조합의 용이성과 그에 따른 효과를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발명의 구성 차이가 주지·관용기술을 단순히 채택한 정도이고 그 구성으로 인한 효과가 예측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음

발명이 단순히 공지의 성분들을 포함하고 통상적인 형태를 갖더라도 그 제제를 이루는 구성 성분들을 조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 구성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현저히 우수하거나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의약 바이오 분야 출원 시 주의사항

## 1. 공지에외 주장

- (1) 출원일 이전 1년 내 논문 등 공지한 내용을 심사에서 제외 가능
- (2)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 2. 서열목록

- (1) 핵산/아미노산 서열목록 기재

## 3. 미생물 기탁

- (1) 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균주) 기탁 후 기탁번호(수탁번호) 기재

# 감사합니다.



변리사 이병진

[bjlee@nampat.co.kr](mailto:bjlee@nampat.co.kr)  
[jalnai1121@gmail.com](mailto:jalnai1121@gmail.com)  
010-4871-7388

◆차종합연구원 기술 사업화실 연락처  
(배수련 변리사) [patent@chamc.co.kr](mailto:patent@chamc.co.kr)